『2025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추가 모집 공고

경남진주강소특구에서는 딥테크 기술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2025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추가로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9일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장

1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5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 □ 사업목적: 특화(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
- □ 사업내용: 진주시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원스톱 기술사업화(기술고도화, 시작(제)품

제작, 시험분석, 연구개발 등) 지원

2 지원내용

- □ 사업기가: 협약일로부터 ~ 2025년 12월 31일
- □ 지원방식: 기술핵심기관 직접 수행(바우처 방식*)
 - * 선정기업의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기술핵심기관에서 재료구매 및 시제품 제작 등을 제공(납품)하는 기업/기관 등으로 직접 지급
- □ 지원대상: 특화(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단독 혹은 경상 국립대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

공통 지원 조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기업
-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 ③ 진주 관외의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 지원분야 및 지원요건

○ 연계협력 분야(첨단산업 연계형)

구분	주요내용	
지원분야	• 첨단산업 연계 핵심기술 또는 시작(제)품개발이 가능한 지역 내 기업 지원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포함하는 사업화 전주기 지원	
지원요건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내 특화 분야 기업 • 진주시 내외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		
● 기업단독 ※ 2025년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 R&BD사업 및 전략기술연계 R&BD사업과 중복		
지원규모	• 건당 50백만원~100백만원 이내 예산 범위 내 지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필수조건	• 연구개발계획서 상 연구개발기간 내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디자인권 등) 출원 또는 등록 필수	

- □ 지원제외 대상
- <u>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5호)의 "제14조(사전검토)"</u>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 [공고문 5페이지 참조]
- □ 세부지원분야별 지원내용(예시)

구분	세부지원분야	지원내용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구입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지원	
연구재료 제작비	시제(작)품 제작	•설계 혹은 제조(공정)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용 혹은 실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 제작 지원	
외부전문기술	BM 컨설팅	• 시장환경 변화에 상응하고 보유기술·제품의 성공적 사업화 추진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재설계 등 컨설팅 지원	
활용비	디자인 및 마케팅	• 제품 카탈로그, 제품 매뉴얼 등의 오프라인 제작 지원	
(연구개발비의 40%이내 사용가능)	시험/분석/인증	•시험·분석 의뢰 및 평가, 인증 취득 등의 지원	
기시케시 친초	지적재산권 확보	•특허 출원/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사 비용 지원 (단, 특허 출원/등록비는 지원불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시장조사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품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 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 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 제품 동향조사 등의 시장조사 지원	

- ※ 상기 예시를 참조하여 세부지원 분야는 신청기업의 사업목표에 맞게 변경 가능함
- □ 민간부담금: 해당 없음
-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신청기업에 귀속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
- □ 기술료 징수: 해당 없음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 성과관리 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사업 공고 및 사업 관리 보장 및 최종 평가 수혜기업 ● 기술핵심기관 협약 체결 사업 수행

□ 추진절차

3

<u>절</u> 차	<u>일 정</u>	<u> 주요내용</u>
사업공고 5월 29일 ~ 6월 12일		• 모집 공고
Û		
사업신청 접수	5월 29일 ~ 6월 12일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서류검토
Û		
평가 및 선정	6월 18일(예정)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확정/발표평가
Û		
협약체결	평가 후 별도 안내	•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Û		
사업수행	협약 기간	• 사업수행
Û		
중간 점검	9~10월	• 사업 추진현황 중간 점검
Û		
사업수행 결과보고	협약기간 종료 후	• 결과보고 / 최종평가 / 연구개발비 정산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2025년 6월 18일(예정)
-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진행

□ 선정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중(%)	
추진계획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30	
구선계획 다 칭성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30	
기이 되스쳐 미 초기선과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40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40	
지원 효과성 및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20	
사업비 적정성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30	
합 참 계			

-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진행함
-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연구책임자 외 발표 시, 위임장 필요)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 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 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

검토사항	પાંક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 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 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 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중복 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극히 불량(불성실수행)"으로 평 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 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참여제한 여부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 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역부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있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 1. 기업의 부도 또는 휴ㆍ폐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희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3.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단, 희생인가를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4. 파산·희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희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5.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 상기의 신용등급 'BBB'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등)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유의사항

공통사항

-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나,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마.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바.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 아. 선정 기업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및 경남진주강소특구에 지원 후 5년간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 및 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7 -1 11 71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근거법령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개별사업 관리치침 소급 적용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nopolisjinju.com)

진주시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gnu.ac.kr)

- 접수방법: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E-mail 제출 후, 접수 기간 내 원본 제출
- 접수기간: 2025. 5. 29.(목) ~ 6. 12.(목) 14:00까지
- 접 수 처: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055-772-4846, innopolis@gnu.ac.kr)
 - (우) 52828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407동 204호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워본을 스캐히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제출 후. 접수 기간 내 워본 제출(직접 혹은 우편)
- 발표 자료 사전 준비 요망

연번		제출서류	서식	비고
	1	사업신청 공문	-	신청기업 제출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1호	신청기업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	신청기업 제출
	4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신청기업 제출 (법인인 경우)
	5	최근 3개년도('22~'24년) 재무제표 (원본대조필) 또는 희계감사보고서 (원본대조필) *	-	신청기업 제출
필 수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기업 제출
	7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	-	신청기업 제출 (협약시 제출 가능)
	8	의무이행서약서	서식 2호	신청기업 제출
	9	과제 중복성 검사 결과지***	-	신청기업 제출
	10	평가 동의서	서식 3호	신청기업 제출
	11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4호	신청기업 제출
해당 기업	12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서식 5호	진주 외 신청기업 제출
* 찬언 3년 이내 기억은 해당여도 자료마 제축(당해역도 찬언기억의 경우 제축 예외)] 거ㅇ 게츠 세이\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예외)

※ 최종 선정 시 신청서류(워본)와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24년), 4대보험가입자명부 (2024년) 제출 필수

□ 문의처

당당부서: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특화지원팀

담당자	연락처	E-mail	주소
박지영	055-772-4844	inn an alia@may a a lua	(우) 52828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김혜정	055-772-4846	innopolis@gnu.ac.kr	(우) 52828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신학협력관(407동 204호)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화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연구개발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 핵심기관(경상국립대학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가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워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워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o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ㆍ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있음
- 참여인력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 보험 납부 증빙이 가능해야 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3개 사이트 모두 유사과제 검색 후 결과자료 제출(별첨 1. 자료 참고)